국가정책조정회의

공 개

#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

2011. 10. 14

**관계부처 합동**

## 목 차


I. 검토 배경 ····· 1

II. 현황 및 문제점 ····· 2

III. 유사석유제품 근절방안 ····· 3

IV. 향후 추진일정(Action Plan) ····· 7

참고자료 ····· 8

## Ⅰ 검토 배경

□ 최근 유사석유로 인한 **주유소 폭발 사건, 화재사건**이 연이어 발생, 이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**인명피해**(사망 4명)**도 속출**

* 수원·화성 소재 주유소폭발('11.9.24, 9.28), 안산 유사석유주입차량 폭발('11.10.5)

○ 유사석유문제가 단순 탈세 차원을 벗어나 **국민안전을 심각히 위협**하게 됨으로써 근본적 대책 마련 긴요

□ **유사석유제품**은 휘발유에 용제 등을 혼합하거나, 경유에 등유·용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,

* 용제: 솔벤트, 신나 등으로 불리며, 페인트 희석제 등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

○ **탈세*로 인한 부당이득****이 크고, **단순 혼합으로 제조가 가능**하여 **유통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**

* 유류세 현황(부가세 제외): 휘발유(746원), 경유(518원)

**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세수탈루액은 연간 1조 6천억원('09년 기준)으로 추정되며, 전면 차단시 유류세의 약 8.7%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 기대

□ 고유가에 따라 값싼 제품*만을 선호하는 **소비자의 왜곡된 인식**도 불법 길거리 유사석유 유통 지속의 요인

* 정품 휘발유보다 길거리 유사휘발유가 약 500원/L('11.9월 기준) 저렴

○ 유사석유제품을 **대체석유제품으로 오인**하거나, **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확고한 인식 부족**

☞ 유사석유제품으로부터 **국민의 안전을 확보**하고, 탈세 등 **불법행위 방지**를 위해 **유사석유제품 근절방안을 수립·추진**할 필요



## Ⅱ 현황 및 문제점

□ 유사석유 **사용자** 및 **원료**(용제 등) **공급자 처벌 규정을 도입**하고, **처벌 방식과 내용도 강화***하고, **특별 합동단속을 실시****하였으나,

* 유사석유 판매사업자 공표 의무화('06년), 3년간 3회 적발시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 6개월 등록제한 등('10년), '유사석유 신고포상제' 운영('04.9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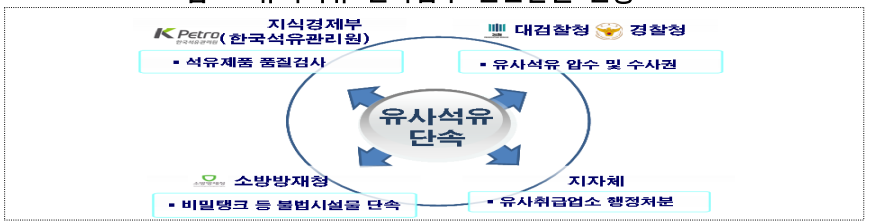
** 유사석유 제조장 등 총 1,364건(유사석유 343백만L 압수) 단속('11.3~6월)

○ **단속권한의 분산, 처벌의 실효성 부족**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사석유 유통에 대응하기에 역부족

□ **(권한분산)** 현재 **석유관리원**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유통관리만 담당, **비밀탱크에 대한 수색·단속 권한이 없으며, 단속인력도 태부족***

* 105명(현장인력 70, 시험인력 35)이 약 13,000개 주유소와 약 2,000여 길거리 판매업소 단속중

**<참고: 유사석유 단속업무 권한분산 현황>**




□ **(솜방망이 처벌)** 유사석유 적발시에도 지자체에서 사업정지보다는 **과징금 처분이 일반적**이어서, **과징금 납부 후 영업을 지속**

* 현행 처분기준: 2회 위반시까지는 과징금과 사업정지 중 선택적 부과(3회 위반시 등록취소)

□ **(유통실태) 비밀탱크 설치, 원격수신장치** 등을 조작하여 **단속 무력화를 시도**하는 등 **지능적으로 발전**

* 비밀탱크 등 지능적 사례 적발건수 : ('09년) 21건 → ('10년) 42건 → ('11.9월 현재) 77건

○ 노상에서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석유 **말통판매** 및 야간·공휴일·새벽 등 **취약시간대**를 틈타 **게릴라식으로 영업**

# Ⅲ 유사석유제품 근절 방안

◈ **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, 실효성 있는 처벌**을 통해, 유사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**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**

##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

### 1-1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

□ **(경찰청 합동 특별단속)** 상반기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큰 성과*를 거둠에 따라 하반기 경찰청과 합동단속 재추진('11.10.1~31)

* 유사석유 제조·판매사범 등 구속 159명, 불구속 1,891명 등 총 2,092명 검거

**유사석유 특별단속에 대한 경찰청 협조가 필수**

▶유사석유제품 제조·판매가 음성적,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**단속 즉시 증거 확보(수사권한 행사)**, 공급자 역추적을 통한 **제조장 단속, 유사석유 압수, 위협적인 업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** 등 단속현장을 제압하기 위해서 **경찰지원은 필수**

○ 유사석유 누범자에 대한 **구속수사 등 엄중처벌**, 유사석유제품은 **전량 압수, 불법시설물**에 대해서는 **철거**를 추진하는 등 **상시단속체계 구축**

*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 경찰에게는 특진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

□ **(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)**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1,136업소에 대해 **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** 실시

* (1차, '11.9.27~10.5) 3회 이상 적발된 84업소, (2차, '11.10.6~10.15) 2회 적발된 196업소, (3차, '11.10.16~10.31) 1회 적발된 856업소

☞ 범부처 차원에서 **시설물 점검 상시 합동단속체계**를 구축하여,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



### 1-2 한국석유관리원 권한 강화

□ **(사법경찰권)** 유사석유 발견 즉시 **물품압수** 및 **공급자 추적 수사** 등 **단속의 적시성 및 실효성 확보**를 위해 **사법경찰권 확보 방안 검토**

* 특사경은 주로 공무원에 부여, 수사기관은 업무과다로 단속지원에 한계

□ **(불법시설물 점검)** 비밀탱크, 이중탱크 등 **불법시설물의 단속 실효성**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에 **시설점검 권한부여** 추진

* 석대법에 불법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(§39) 및 시설점검 권한 규정(§38) 신설

□ **(유사석유 중지명령)** 유사석유 **제조·판매 등이 명백하고 긴급**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**중지명령 권한 부여** 추진

* 석대법에 유사석유 제조·판매 중지명령 권한자를 지자체와 함께 석유관리원도 규정(§30)

□ **(단속인력 충원)** 현재의 인원으로 20,000여개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**대폭 인력 확대 필요**

* 현재는 검사인력 70명, 시험원 35명 총 105명이 1인당 190업소의 검사를 담당
* 시장감시감독관련 인력(명) : (농산물품질관리원) 1,449, (가스안전공사) 1,112, (농수산물유통공사) 571

### 1-3 단속효율화를 위한 제도·장비 도입

□ **(원료물질 불법유통 차단)** 유사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**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** 및 실지조사 강화

* 현재 사업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는 수급보고 의무를 실소비자에게도 확대(석대법§38)

□ **(신고포상제 금액 상향조정)** 유사석유 취급 **주유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향(20→50만원) 조정**을 통해 단속 효율성 제고

* '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' 개정('11.4분기)

□ **(첨단장비 긴급구매)** 비밀탱크 등 **지능화된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**하기 위해 **GPR, 산업용 내시경** 등 첨단장비 **긴급구매 추진**('11.4분기)

* GPR(Ground Penetration Radar) :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(약 1억원/대)

## 2 처벌의 실효성 강화

### 2-1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(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)

□ **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**는 **1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**하는 '원 스트라이크 아웃제'를 도입하여 **유사석유 근절** 추진

*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고 **유사를 재취급한 비율이 24.3%**에 달함

○ 시설물 개조* 등 **악의적 유사석유 취급**에도 **단순 유사석유 취급과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**하는 등 **처벌 불균형**이 심각

* 비밀탱크, 이중탱크, 이중배관, 원격조정장치 등 의도적인 유사석유 취급을 위한 시설물

### 2-2 과징금 상향 조정(단순 유사석유 취급자)

□ 과징금 처분 후 지속영업(유사석유 취급)시 **수억원의 부당이득**(최고 2억원/월)**이 발생**함에 따라, 과징금(5천만원)의 실효성에 의문

○ **단순 유사석유 취급자**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인 **과징금 액수를 상향조정(5천만원→1억원)**하여 **처벌의 실효성 제고 추진**

**<참고: 유사석유 적발시 행정처분 현황('09년~'11.상반기) >**

| 구분 | | 행정처분(업소수)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사업정지 | | 과징금 | | 경고 | | 소계 | |
| 합계 | 비율(%) | 321 | 29.4 | 675 | 61.9 | 94 | 8.7 | 1,090 | 100 |

### 2-3 불법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추진

□ 악의적 유사석유 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**유사석유 판매 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** 필요

○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**범죄수익 환수 대상범죄에 포함토록 법률개정** 추진(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)

* '11. 9. 8. 입법예고, '11. 11. 국회 제출 예정



## 3 홍보 등 기타 대책

### 3-1 유사석유 폐해 등 대국민 홍보

□ 유사석유의 해악에 대한 **국민의 공감대를 확산**시키고, 이에 따른 **유사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**를 위해 **대국민홍보 추진**

*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예산 확보 추진('11.4분기)

### 3-2 '유사석유' → '가짜석유' 용어 변경

□ 국민이 **쉽게 불법임을 이해**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해 **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**할 수 있게 **"가짜석유"로 용어 변경** 추진

* 유사석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오인하거나, 정상석유제품에 유사한 합법제품으로 오인

### 3-3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

□ 주유소 등의 **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**하기 위해 **수급거래 상황 전산시스템*을 등록요건**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(석대법 시행령 개정)

* 정유사 ERP, 석유판매업자 POS 등을 통합관리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

○ 유사석유 등 취급시 **입·출고내역 불일치를 포착**하여 **실지조사**를 통해 유사석유, 무자료 거래 및 면세유 불법판매 등 차단

# Ⅳ 향후 추진일정(Action Plan)

##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

| 주요대책 | | 주관(협조) | 일 정 |
|---|---|---|---|
|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|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 지속 추진 (공로자 포상 등 인센티브) | 각 부처 등 (지경부, 경찰청, 행안부) | '11. 10월~ |
| | 소방청 합동 시설물 지속점검 추진 | 지경부(소방청) | '11. 10월~ |
| 한국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| 사법경찰권 확보방안 검토 | 지경부(법무부, 경찰청) | '12. 上 |
| |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 점검권한 부여 | 지경부 | '12. 上 |
| | 유사석유 중지명령권한 확보 | 지경부 | '12. 上 |
| |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인력 충원 | 지경부(재정부) | '11. 下 |
| 단속 효율화를 위한 제도·장비 도입 | 용제 실사용자 수급보고 의무화 및 보고주기 단축 | 지경부 | '12. 上 |
| | 신고포상제 포상금액 상향 조정 | 지경부 | '12. 上 |
| | GPR, 산업내시경 긴급 구매 | 지경부 | '11. 下 |

## 2 처벌의 실효성 강화

| 주요대책 | | 주관(협조) | 일 정 |
|---|---|---|---|
| 처벌강화 | 원스트라이크아웃제 | 지경부 | '11. 下 |
| | 과징금 상향 조정 | 지경부 | '11. 下 |
| | 불법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| 법무부 | '11. 下 |

## 3 홍보 등 기타 대책

| 주요대책 | | 주관(협조) | 일 정 |
|---|---|---|---|
| 홍보 등 기타대책 | 대국민 홍보 강화 | 각 부처 | '11. 10월~ |
| | 유사석유→가짜석유로 용어 변경 | 지경부(법제처) | '12. 上 |
| | 수급상황보고 전산시스템 구축 | 지경부 | '12. 上 |



## 참고 유사석유제품 주요 유통현황

### □ 지능적인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 주유소 적발



계산기 안에 설치된 리모컨 적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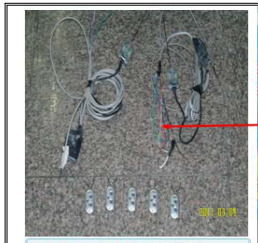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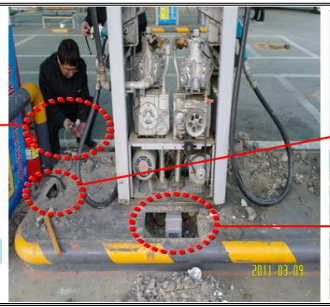
이중탱크 적발



이중탱크 해체

### □ 이중배관 설치 및 리모콘 조작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






주유기 밑 땅속에 이중배관 설치 후 리모컨을 조작하여 유사석유 판매

### □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 형태



길거리 영업




유사석유 정보공유 및 판매를 위한 인터넷 카페




배달판매를 위한 전단지